

[별지 제4호 서식]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
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 보고서(제10조 관련)

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변경 보고서				처리기간
				15일
보고자	대표자의 성명		신용정보업,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일자	0000년 00월 00일
	상호		허가번호	
	본점소재지			
변경 사항	1. ☐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. ☐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인·허가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. ☐ 정관의 변경			
변경 사유				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				
0000년 00월 00일 보고자 _____서명 또는 인				
금융감독원장 귀하 ※ 구비서류				수수료
1.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정관의 변경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, 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				없음